

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(기업형IRP)

서류확인 및 접수확인자	담당	책임자

전 산 인 자 란

1. 가입자 정보

20 년 월 일

기업명		퇴직연금 계좌번호	
가입자명		생년월일	

2. 이전 정보

이전구분	이전 사유	현물이전*
<input type="checkbox"/> 전부이전	<input type="checkbox"/> 제도전환(기업형IRP → DC)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열사 이전(과거입사일 인정) <input type="checkbox"/> 합병, 분할, 양수도 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연금사업자 변경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
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이전	<input type="checkbox"/> 계열사 이전(과거입사일 인정) <input type="checkbox"/> 합병, 분할, 양수도	
예약지급일**		수수료 연동출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(사전에 약정된 경우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(기업별도 입금)
이전받는 금융기관	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	금융기관 : 계좌번호 : 예 금 주

* 현물이전은 당행 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** 상품 매도기간을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급여신청시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성(대기)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예약지급일에 지급합니다.

3 현물이전 유의사항

1. 현물이전 받는 금액은 현물이전 하는 상품의 평가액이며, 이전 후 상품을 해지(급여지급, 계약해지 등)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아 이전 받은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2.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물이전 처리됩니다.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
가입자 : _____ 서명 또는 (인)

4. 계열사 이전 (이전사유가 '계열사이전'인 경우 기재)

이전하는 기업명	와	이전받는 기업명	는 본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을 합의합니다. 이전받는 기업 : _____ (법인인감)
----------	---	----------	---

※ 이전 받는 기업의 법인인감증명서 청구

[유의사항]

1.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급여지급 처리 지연시 지연보상금 지급 안내 1) 은행의 퇴직연금 계약서(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계약)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금전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. ▶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기업형IRP : 근로자 또는 가입자
2) 지연보상금은 급여지급 신청일(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)을 포함하여 3영업일*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, 급여지급 신청 금액에 대해 지연기간에 따른 이율**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단,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. *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(단,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다른 경우 5영업일) ** 지연기간이 14일 이내 연 10%, 지연기간이 14일 초과 : 연 20%
2.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.
3.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전 계약이전 거래시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,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본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청구하며, 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된 신청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기업명 : _____ 서명 또는 (인) 가입자 : _____ 서명 또는 (인)

※ 인감은 퇴직연금 거래신고 인감 날인.

